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694 제출연월일: 2024. 7. 1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하고, 진정의 당사자,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의 문서를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를 제49조의2로 한다.

제4장에 제49조의3 및 제4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9조의3(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위원회는 제30조제1 항에 따른 진정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(이하 "전산정보처리시스템"이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49조의4(전자적 송달 등) ① 위원회(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진정의 당사자,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 이 법 및 위원회 규칙에 따른 각종 문서의 송달 또는 통지(이하 "전자적 송달등"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다만, 진정의 당사자,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전자적 송달등은 송달할 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는 방

법으로 한다.

- ③ 전자적 송달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.
- ④ 전자적 송달등은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가 제2항에 따라 등재된 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2항에 따라 그 등재 사실을 알린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.
- ⑤ 전자적 송달등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50조</u> (생 략)	<u>제49조의2</u> (현행 제50조와 같음)
<u> <신 설></u>	제49조의3(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
	<u>구축·운영) ① 위원회는 제30</u>
	조제1항에 따른 진정 관련 업무
	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
	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
	<u>· 운영한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
	시스템(이하 "전산정보처리시
	스템"이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
	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
	<u>한다.</u>
<u><신 설></u>	제49조의4(전자적 송달 등) ① 위
	원회(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
	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
	다)는 진정의 당사자, 관계인 또
	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전산정
	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
	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
	및 위원회 규칙에 따른 각종 문
	서의 송달 또는 통지(이하 "전
	<u>자적 송달등"이라 한다)를 할</u>
	수 있다. 다만, 진정의 당사자,
	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이에

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전자적 송달등은 송달할 문 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 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 또는 통 지반을 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한다.
- ③ 전자적 송달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.
- ④ 전자적 송달등은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가 제2항에 따라 등 재된 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2항에 따라 그 등재 사실을 알린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4일이지난 날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.
- ⑤ 전자적 송달등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